

심 사 보 고

1997. 9. 25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9월 12일, 충청북도지사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7년 9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41회임사회 제3차교육사회위원회 (1997. 9.25)상정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보건환경국장 조규린)

가. 제안이유

- 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방지와 보전관리를 위하여 현행 고시제에서 허가제와 병행하는 등 지하수법이 '97.7.14일부터 대폭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조례로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정리하고
- 현지성 및 주민이해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, 민원사무의 신속한 추진 및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현재 위임된 사무를 개정 지하수법에 따라 조문 정리
(제1항 가목 내지 타목)
- 개정 지하수법에 새로이 신설된 내용중 다음 사항을 위임함
 - 지하수개발·이용의 허가 (하목)
 - 지하수 개발에 따른 착공 및 준공신고 (거목)
 -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(너목)
 -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 (더목)
 - 지하수개발·이용 시공업자 및 영향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(러목)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김영만)

- 지하수법이 '97년 7월 14일부터 대폭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존조문 정리와 신설된 내용을 위임함으로써
-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이해와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일치 및 현지성을 고려하고, 민원사무의 신속한 추진,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-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지역환경 현안인 지하수 허가,관리 업무에 대한 일관성 유지와 통합조정 의 어려움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- 신구조문대비표